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성훈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1381
----------	-------

발의연월일 : 2026. 9. 15.

발 의 자 : 박성훈 · 임이자 · 김정재
이헌승 · 한지아 · 김석기
박충권 · 김기웅 · 박수영
정연욱 · 김도읍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는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을 통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여 국토의 균형발전을 추진하고 있으나, 지방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 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기여도는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특히, 지방 이전 공공기관의 자금이 지역 금융기관이 아닌 시중은행에 집중되면서 지역 재투자 효과가 저조하고 자금이 수도권 등 역외로 유출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는 지방 이전 공공기관이 지역 금융기관을 이용할 제도적 유인이 부족하기 때문임.

따라서 공공기관의 경영실적 평가 시 지역 금융기관의 이용실적, 지역경제 발전에 대한 기여도 등을 평가항목으로 반영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공공기관의 지역 금융기관 이용을 활성화하여 지역경제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8조제5항제7호 및 제8호 신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제5항제7호를 제9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공공기관이 소재한 지역의 경제 발전에 대한 기여도
8. 공공기관이 소재한 지역의 금융기관(전국을 영업구역으로 하지 아니하는 금융기관을 말한다) 이용 실적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영실적 평가에 관한 적용례) 제48조제5항제7호 및 제8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경영실적을 평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8조(경영실적 평가) ① ~ ④ (생 략)	제48조(경영실적 평가)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제1항에 따른 경영실적의 평가 기준과 방법은 운영위원 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재정 경제부장관이 정하되, 공기업· 준정부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평가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정하여야 한다.	⑤ ----- ----- ----- ----- -----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u><신 설></u>	<u>7. 공공기관이 소재한 지역의</u> <u>경제 발전에 대한 기여도</u>
<u><신 설></u>	<u>8. 공공기관이 소재한 지역의</u> <u>금융기관(전국을 영업구역으</u> <u>로 하지 아니하는 금융기관을</u> <u>말한다) 이용 실적</u>
<u>7. (생 략)</u>	<u>9. (현행 제7호와 같음)</u>
⑥ ~ ⑩ (생 략)	⑥ ~ ⑩ (현행과 같음)